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1993. 12

全相仁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이 연구는 현대 北韓 家族政策의 변화를 巨視的이고 動態的인 사회변동에 관련시켜 분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를 國家와 權力關係, 生産樣式과 生産關係 등과 같은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이는 북한과 같이 사회변동이 '위로부터'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 정치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한 결과이다. 이 연구는 따라서 북한 가족제도의 '實相'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家族에 관련된 法과 制度, 그리고 政策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와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북한의 家族政策은 지난 半世紀에 걸쳐 국가적 목표와 주어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해 왔다. 국가는 家族의 문제를 社會의 私的 領域에 방치하지 않고 干涉과 規制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결국 북한의 家族政策은 국가엘리트가 의도하는 방향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의 실제 내용과 성격은 일관된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가 직면해 왔던 정치적, 경제적 局面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정책과 제에 의해 可變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은 社會主義 家族原理와 儒教的 家父長制라는 兩大 軸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兩者間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공존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하였으며, 정책상의 수요에 따라 강조점이 移動하였다.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걸친 사회주의 이행기에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혁파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다. 이는 反帝·反封建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해방과 전쟁을 전후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대처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결과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말까지의 사회주의 발전기 동안 북한의 가족제도는 사회주의 원리와 가부장제가 병존하는 二重的 성격을 드러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은 가부장제의 공적 부활을 통하여 북한체제를 ‘家族國家’로 변모시키고 가족을 사회의 ‘세포’로 변화시켰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 여성노동력 동원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골간을 와해시켰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狀況의 악화, 김정일 후계체계의 공고화, 그리고 對外情勢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점차 퇴조하는 대신 家父長制가 더욱 강화되었다. 公有機體的 家族國家論이 ‘사회정치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에 의해 더욱 교조화되었고,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社會統制와 社會扶養·福祉의 의무가 국가로부터 가족내부로 점차 이전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대한 것이다. 1990년에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北韓의 家族政策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가족정책에 관한 한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으로 ‘U턴’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퇴조하는 것은 현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경우 家族原理의 이념적 志向과 실제 사이의 乖離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편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제는 經濟的 沈滯局面이 지속되고 김정일 후계체계가 巡航하며 對外的인 開放이 제한적인 것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家父長的 家族國家 원리는 북한 지도부의 統治費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강제력이나 물질적인 풍요, 또는 民主主義的 政治過程 대신, 規範的이고 유기체적인 정치질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체제유지를 위한 費用負擔은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앞으로 '사회정치생명체론'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家族國家的 屬性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경제사정의 악화가 계속되어 男性家長들의 불만이 점차 증대하고 여성들의 失業率이 증가할 경우, 여성의 再家庭化가 더욱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여성의 地位 弱화를 통해 사회적 불안요소의 확산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社會福祉의 책임을 國家로부터 가정으로 점차 轉嫁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難에서 파생하는 政治·社會的 불만의 타격을 가족 수준에서 한번 濾過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장차 改革과 開放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가족제도의 탈사회주의적 경향은 쉽게 顛覆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개인 혹은 家族單位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強化하려는 정책은 생산 단위의 탈사회화 혹은 탈집단화로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 생산단 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中國의 경험에서 보 는 것처럼 농업분야에서 家族農의 부활은 북한으로서도 유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예상되는 社會的 副作用도 가정의 機能을 강화시킬 것이다. 靑少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逸脫行爲가 늘어나고 社會全般的으로 사회주의적 規範이 해이해질 경우 社會化 및 社會統制의 책임이 家族 內部的 수준에서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理論的인 측면에서 북한의 가족정책은 階級葛藤論에 입각하여 상부구조로서의 가족을 소멸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評價하던 英겔스·레닌적 관점으로부터, 家族을 社會統制 및 社會統合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儒敎風의 有機體的 家族主義 혹은 파슨즈式의 構造機能主義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와 가족의 共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古典的 이론이 북한에서 國家와 家族의 共生論으로 역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이것은 가족의 問題를 놓고 사회주의적 처방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던 맑스의 苦悶이 북한에서 표출된 현상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慣性의 法則’을 확인하는 法社會學的 결론이다. 사회조직 가운데 가장 持續的이고 또한 가장 私的인 것으로 남아있는 가족제도는 다른 분야의 社會變動과는 달리 國家의 強制力에 저항하는 힘이 유달리 강력하다. 더군다나 북한과 같이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통적

사회·문화가 온존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북한이 가족관계의 사회주의적 혁명이라는 레토릭의 裏面에서 儒教的 가부장제를 발전·강화시킨 것도 당면적으로 주어진 政治的 需要와 經濟的 條件에 부응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관성적 측면에 일찍부터 着眼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영합하거나 逆利用한 결과일 수도 있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北韓 家族政策 研究의 理論的 背景	6
1. 社會主義 家族理論	6
2. 家父長制 家族理論	11
第 III 章 社會主義 移行期의 家族革命	15
1.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家族政策的 含意	15
2. 韓國戰爭과 家族制度의 變化	24
第 IV 章 社會主義 發展期의 二重의 家族政策	29
1. 經濟發展과 社會主義의 家族政策	30
가. 女性의 勞動階級化	30
나. 家事 및 家庭의 社會主義的 改造	35
다. 社會主義的 家族政策의 評價	39
2. 金日成 唯一體制의 確立과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42
가. 唯一支配體制의 構築과 主體思想	43
나.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에서의 家族國家觀	47

第 V 章 社會主義 沈滯期 家族政策의 脫社會主義化···54

1. ‘사회정치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55

2. 經濟沈滯와 家族政策의 復古主義·····59

第 VI 章 結論 및 向後 展望·····66

參考文獻·····71

第 I 章 序 論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北韓의 家族政策을 북한체제의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需要 및 그 變化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¹⁾ 이는 북한 가족연구의 초점을 보다 巨視的이고 動態的인 사회변동에 관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까닭은 가족이 자연적 단위만도 아니고 순수히 私的인 제도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가족은 사회적 단위임과 동시에 公的인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가족의 분석에는 國家와 權力關係, 生産樣式과 生産關係 등과 같은 정치경제학적 맥락이 배제될 수 없다.²⁾ 특히 북한과 같은 현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변동이 ‘위로부터’ 그리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 정치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³⁾

되풀이 하거니와 本考는 북한의 가족‘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이

-
- 1) 本考에서 말하는 가족정책은 女性政策을 포함하는 것이다. 가족에 관한 研究와 여성문제에 대한 考慮는 不可分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人口의 절반이 女性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支配的 社會秩序 혹은 家族制度가 男性優位の 原則에 기초하고 있는 한, 家族政策은 남녀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 혹은 유지와 無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서선희, “가족은 유용한 분석단위인가?,” 「가족학논집」 3 (1991), pp. 55~68.
 - 3) 이은숙,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 199.

다.⁴⁾ 다시 말해 북한 가족제도의 '실상'에 대한 관심은 副次的인 것이다. 연구의 초점을 가족에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에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절감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의 절대적 부족현상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가 지니게 될 限界는 미리 예견되어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가족문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성급하게 懷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와 같이 국가가 강력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정책의 效果性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된 국가정책이 실현될 蓋然性은 民主主義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가정해도 무방한 것이다.⁵⁾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가족·여성정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정책의 실제 내용과 성격은 일관된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가 직면해 왔던 정치적, 경제적 局面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정책과제에 의해 可變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가족정책의 기

4) 그러나 가족관계의 變化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目的으로 집행된 其他 정책이 결과적으로 가족관계 내지 가족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本考에서 말하는 가족정책에 包含된다.

5) 물론 처음 意圖된 政策이 반드시 예견된 結果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는 家族政策의 범위는 의도된 정책이 낳은 기대된 결과뿐만 아니라, 同一한 정책이 초래한 豫想 밖의 結果 및 피이드 백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방향은 社會主義 家族原理와 儒教的 家父長制라는 兩大 軸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兩者間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공존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이기도 하였으며, 정책상의 수요에 따라 강조점이 移動하였다.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정권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팽배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적 가족관계의 改造 裏面에서 봉건적 가부장제가 점차 되살아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 가족관계가 더욱 더 뚜렷이 復元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걸친 국가건설기에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혁파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다. 이는 反帝·反封建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해방과 전쟁을 전후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대처하려는 정책적 배려의 결과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발전기 동안 북한의 가족제도는 사회주의 원리와 가부장제가 병존하는 二重的인 성격을 드러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일성 유일체제의 형성은 가부장제의 정신적 부활을 통하여 북한을 ‘家族國家’로 변모시켰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 여성노동력 동원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골간을 와해시켰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의 수립 및 공고화 과정에서 북한의 公的 家父長制는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적 침체상황의 지속은 社會扶養 혹은 福祉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가족내부로 이전시키는 경향을 초래했고, 여성 노동력

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低下됨에 따라 여성의 再家庭化를 강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상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퇴조하는 것은 현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⁶⁾ 그러나 북한의 경우 가족원리의 이념적 지향과 실제 사이의 괴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편이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공적 가부장적 原理의 강화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통치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經濟難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재가정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남성 家長 일반의 경제적 불만을 脫社會主義的이고 反女性解放的인 가족관계를 통하여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족의 共滅論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주의 家族原理는 북한에서 國家·家族 共生論으로 귀결될 공산이 높은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모두 여섯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북한 가족연구에 대한 이론적 背景으로서 社會主義 가족원리와 家父長的 家族制度를 고찰한다. 제3장은 1940년대 후

6) 이온죽, “中國의 現代화와 女性에 대한 社會意識,”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중국여성연구」(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pp. 91~128; Annie Phizacklea, Hilary Pilkington and Shirin Rai, “Introduction,” in Shirin Rai, Hilary Pilkington and Annie Phizacklea, eds., *Women in the Face of Change: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1~7.

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국가건설기에 실시된 가족관계의 사회주의 혁명과 한국전쟁이 북한의 가족제도 변화에 대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4장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 1970년대 말까지 북한에서 급속한 社會主義 經濟發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김일성 唯一支配體制가 형성되는 시기의 북한 가족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제5장은 政治的으로는 김정일 後繼體系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경제적으로는 低成長 및 沈滯狀況에 들어간 1980년대 이후 時期를 다룰 것이다. 끝으로 제6장은 향후 展望을 포함한 結論이다.

第 II 章 北韓 家族政策 研究의 理論的 背景

1. 社會主義 家族理論

맑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가족이론은 不完全하거나 애매하다. 노동의 원천인 人間生命을 사회적 생산의 일부로 규정했던 맑스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담당하는 가족도 上部構造的 요소라기 보다는 물질 토대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⁷⁾ 물론 인간사회가 가족 중심으로 組織化되는 것을 맑스가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맑스에게 있어서 여성억압 등 봉건악습이 타파되고 兩性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資本主義體制가 붕괴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족을 통한 社會再生産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염두에 둔 노동자들도 일차적으로 男性이었다. 다시 말해 여성 노동력은 부차적인 존재로서, 低賃金으로 남성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다. 결국 맑스는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중요시하여 가족을 弱化 내지 解體시켜야 한다고 하는 인식은 철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맑스가 기존의 가족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제시한 社會主義 革命의 목표는 사유재산의 철

7)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pp. 48~50.

폐를 통해 무계급, 무착취, 무억압의 平等構造를 실현함으로써 인간해방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私有財産制度和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제도와, 女性을 온전한 노동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경제체제는 둘 다 인간해방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임에 분명했다. 그리하여 歷史에 대한 맑스의 唯物論的 이해는 그 자체로서 사회주의 가족 및 여성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후일 엥겔스와 레닌에 의해 그것이 체계화될 수 있는 哲學的 基礎를 제공했다고 평가하는데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 가족이론을 처음 본격적으로 정리한 이는 엥겔스였다. 「家族, 私有財産, 그리고 國家의 起源」에서 그는 一夫一妻制의 개별 가족제도 및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을 社會構造의 歷史的 변화과정 속에서 설명하였다.⁸⁾ 엥겔스에 의하면 역사에서의 결정적인 契機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直接的 생활의 생산으로서 이는 생존의 수단, 곧 衣·食·住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는 社會的 再生産으로서 인간 그 자체의 생산, 곧 種族의 번식이다. 그리고 사회조직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생산에 의하여—하나는 勞動의 發展段階, 다른 하나는 家族의 發展段階—규정된다고 보는 것이 엥겔스의 입장이다.

엥겔스에 의하면 노동의 발전단계가 미약할수록, 그리고 생산물

8) Frederick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Researches of Lewis H. Morgan*, in Volume 2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884/1969), pp. 468~593.

의량이 적을수록, 따라서 사회적 부가 제한될수록 사회조직은 血緣的 紐帶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혈연적 유대에 기초한 사회구조 속에서 노동생산성은 점차 증대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私的 所有 및 交換, 貧富의 차이, 他人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 가능성도 늘어났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계급적 敵對의 기초로 발전하게 되며, 그 결과 혈연적 유대에 입각해 있던 낡은 사회가 새로 발전한 社會階級들간의 충돌로 말미암아 붕괴하는 대신 支配權이 國家에 집중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 엥겔스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이 사회에서는 家族制度가 전적으로 소유관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보았다.

엥겔스에 의하면 일부일처제 가족구조와 女性抑壓의 사회적 起源은 바로 이와 같은 일대 ‘歷史的 轉換過程’이었다. 남성들은 사유재산의 보존과 상속을 위해 母系社會 구조를 전복시키고 一夫一妻制를 확립시켰으며, 原始時代의 자연스러운 性別分業은 剩餘의 발생, 사적 소유, 그리고 계급의 출현 등의 社會的 요인에 의하여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으로 轉化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일처제적 個別 家族은 自然的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條件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시적 自然發生的 共同所有에 대한 私的 所有의 勝利를 반영”한 것이며, 그 안에서 가사노동은 ‘사사로운 것’으로 전락하여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였고, 여성은 남자의 상속자를 출산하고 가정을 관리하는 ‘下人들의 우두머리’로 格下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엥겔스에 의하면 가족의 發生과 여성의 抑壓, 그리

고 계급적 擄取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살던 資本主義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사회적 支配·抑壓構造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르조아 가족제도에 대하여 그는 그것이 夫婦間의 物質的 不平等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資産의 相續權을 차지할 수 있는 적법한 相續者를 낳아주는 對價로 단지 宿食을 제공받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이와 같은 ‘金錢的 結婚關係’를 ‘賣春’으로 묘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엥겔스는 따라서 기존의 일부일처제적 가족구조를 타파하고 가족제도의 사회주의적 革命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일부일처제의 경제적 기초인 私的 所有의 철폐였다.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엥겔스는 일부일처제를 뒷받침하던 기존의 경제적 기초가 불가피하게 소멸하고야 말 사회적 변혁을 기대하였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제의 폐지는 相續可能한 항구적인 財貨, 生産手段 가운데 매우 많은 부분을 社會的 所有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男性 中心의 일부일처제를 ‘眞正한’ 일부일처제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마침내 여성의 解放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그는 豫見했다. 다시 말해 사유재산제도의 철폐에 따라 일부일처제는 消滅되는 것이 아니라 ‘男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 엥겔스의 分析이다.

엥겔스는 生産手段이 社會化됨으로써 경제적 單位로서 個別 家族의 의미는 상실되고, 사사로운 살림은 사회적 産業으로, 그리고 자녀 양육은 公共事業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

태에서야 비로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副次的인 모든 經濟的인 고려가 제거될 수 있으며, 마침내 ‘참된 性愛’(true sex love)가 一夫一妻制 부부간의 기초로서 공고화된다는 것이 Engels의 설명이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夫婦의 상호관계는 부르조아夫婦의 ‘매춘적’ 관계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ngels는 사유재산의 철폐에 의한 일부일처제의 사회주의적 改造를 통해 인간해방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한편 레닌은 Engels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가족제도 및 兩性關係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성의 解放이 사회주의 建設에 直結되어 있다고 인식했다.⁹⁾ “여성운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및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레닌은 社會主義的 人間平等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提示하였다. 그 첫째는 여성을 劣等한 상태로 억압하고 있는 기존의 法律을 폐기함으로써 남녀평등의 制度的·形式的 條件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個人的 家事負擔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社會的 生産勞動에 女性을 전면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레닌도 生産手段의 私所有制가 폐지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파악했다. 곧, 사유재산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여성을 家事奴隸的 桎梏으로부터 끌어낼 때만이 完全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Engels와 共有한 것이다. 레닌은 한걸음 더 나아가

9) V. I. 레닌, 편집부 편역, 「레닌의 青年·女性論」(서울: 함성, 1989) 참조.

사회주의 建設에 있어서 여성의 直接的인 政治的 參與를 주장했다. 그는 사회주의 이상과 완전한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마당에서 여성들을 위한 임무가 도처에 깔려있다고 인식했다. 그리하여 勞動女性으로 하여금 國家權力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한편, 그러한 可能性을 제고하기 위한 女性 및 男性에 대한 (再)教育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2. 家父長制 家族理論

사회주의 家族理論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족제도는 사실상 家父長制(patriarchy)라고 불리는 巨視的인 支配構造의 일부이자 반영이다. 사회주의 가족이론들이 問題의 해결을 사유재산제도의 철폐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溯及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막스 베버는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이념형의 측면에서 傳統的 지배, 合理的·法的 支配,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배로 대별된다고 주장했다. 가부장제는 이 가운데서 傳統에 입각한 지배의 정당성을 가장 典型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베버에 의하면 가부장제란 아버지 및 (혹은) 男便 등이 家長의 지위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나머지 家族成員을 지배하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이와 같은 남성 본위의 통치관행이 사회적으로 外延되어 있

10) Max Weber,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 & ed. with intro. by H. H. Gerth and C. W. Mil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8), p. 296.

는 것이 전통적 지배 정당성의 대표적인 보기라는 것이다.

베버의 가부장제는 그 이후 男女不平等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사회이론으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왈비는 가부장제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社會構造 및 慣行”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가족내 暴力이나 性關係 등을 중심으로 한 私的인 영역으로부터 生産樣式, 賃金體系, 國家組織, 文化制度 등 公的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構造 및 慣習으로 인식되고 있다.¹¹⁾

하트만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제는 물질 토대에 기초한 것으로서, 남자들 內部的 位階的 관계 및 그들간의 集團的 유대를 통하여 남성이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한 세트”라고 설명했다.¹²⁾ 이 가부장제는 定着農의 발달, 私的 所有關係의 발생, 그리고 국가의 발원에 並行하여 그 原始的인 형태가 태동한 이래, 다양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과 결합하면서 現代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경우도 가부장제와의 接木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하트만의 주장이다. 또한 현실 사회주의체제 역시 가부장적 사회관계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못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文化·歷史的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儒教

11) Sylvia Walby, *Theorizing Patriarchy*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12) Heidi Hartmann,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Anthony Giddens and David Held, eds., *Class, Power, and Conflict: Classical and Contemporary Deb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p. 446~469.

의 통치원리와 구조는 家父長的 家族關係 및 社會秩序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하여 儒敎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제적 특성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¹³⁾ 유교는 그 특유의 宇宙論과 人性論에 입각하여 사회질서 혹은 사회관계를 기본적으로 差等的이고도 差別的인 것으로 前提한다. ‘差等主義’는 인간을 위계적·수직적 사회관계로 배열하는 것이고, ‘差別主義’는 수평적인 遠近에 따라 사회적 친소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사회는 縱的인 位階關係와 橫的인 친소관계를 씨(緯)와 날(經)로 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관계를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대표적인 德目은 三綱五倫 등에 잘 나타나 있다. 君主와 百姓 또는 男子와 女子는 기본적으로 차등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같은 男子들간에 있어서도 身分과 年齡 등에 입각한 차별주의는 전체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 유교 이데올로기의 核心이다. 그리하여 유교는 가부장제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家族主義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관계 중에서 家族關係를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儒敎原理가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다른 社會文化圈에서와 마찬가지로 儒敎 이데올로기 역시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勞動力의 社會的 再生産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의

13) 이 부분은 최흥기, “유교와 가족,” 「가족학논집」 3 (1991), pp. 207~227에 집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일차적인 역할은 人口의 擴大再生産이며, 이러한 인식은 女性의 潛在的 出産力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家族의 형성, 곧 결혼을 ‘人倫之大事’로 重視하게 되었다.

둘째는 生産을 중심으로 가족이 담당하는 經濟的 機能이었다. 유교적 社會체제하에서는 가족이 사실상 유일한 經濟的 生産單位이며, 국가는 租稅와 身役의 대상을 일차적으로 가족(戶)에서 구했다. 따라서 국가는 生産단위로서의 가족을 항상 강조하면서 가족의 社會적 비중을 크게 높였다. 그런데 儒敎는 가족을 生産의 主體로서 인식함과 동시에 가족을 하나의 社會保障 單位로 간주했다는데 중요한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가족성원간의 相互扶養을 ‘義務’로 이해함으로써 生産을 위한 社會적 역할 못지않게 그것의 家族內的 기능을 크게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은 유교원리하에서 가족이 수행하는 社會統制的 기능이다. 유교가 法治 보다는 德治 혹은 禮治를 선호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거니와 유교는 그러한 德治와 禮治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도 불가결한 단위로서 家族을 설정했다. 다시 말해 유교는 國家와 個人의 중간단계로서 가족이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기초적 制度라고 인식했다. 체제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家族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논리는 ‘孝’를 전제로 한 ‘忠’의 개념 설정이라든가, ‘齊家’가 ‘治國’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념속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가족을 통한 社會化 역시 儒敎에서는 體制順應을 기대하는 社會統制 政策의 일환이었다.

第 Ⅲ 章 社會主義 移行期の 家族革命

해방 직후 북한에서 태동한 사회주의 정권의 최대 과제는 과거 朝鮮朝 지배 및 日本 統治와의 차별화를 통한 社會主義 革命政權의 對內的 正統性을 확보하는 것과 植民地 經濟를 청산하고 경제적 自立과 發展을 모색하는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統一國家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公式 出帆을 경유하여 1950~1953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北韓의 家族政策은 그 이후 어느 때보다 社會主義 原則에 충실한 것이었고 그 方法 또한 革命的이었다. 사회주의 移行期の 北韓은 韓國戰爭 이전까지의 '平和時期'와 한국전쟁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전기에 나타난 가족정책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副應하기 위한 意圖的인 노력이었다면,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 家族關係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촉진하고 加速化할 수 밖에 없던 불가피한 條件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1.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家族政策的 含意

사회주의 革命政權으로서의 북한은 기존 支配階級과의 정치적 연합을 모색하는 대신 정치적 動員의 핵심적 대상을 農民과 勞働者階級에서 구했다.¹⁴⁾ 그리고 그 방법은 資產所有의 불평등에 기초한 경제적 下部構造를 와해시키고, 家父長的 전통에 바탕을 둔 上

部構造로서의 사회적 關係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북한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일대 改革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북한정권은 처음부터 女性解放의 문제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을 드러냈다. 1945년 10월 25일 김일성은 평양시 여성일군들앞에서의 강연을 통해 여성들이 建國事業에 적극 떨어나설 것과 여성들의 社會的 解放을 실현하는 일, 그리고 大衆的인 女性組織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¹⁴⁾ 두 말할 나위 없이 이는 불체비키 혁명 직후의 레닌과 중국혁명 뒤의 모택동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김일성의 연설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통해 男性家長 중심의 봉건적 사회·경제질서를 清算하는 대신 女性을 새로운 정치적 支持基盤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통해 해방 직후 人口의 대량 南下에 의해 초래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파할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¹⁵⁾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정권이 집권

14) 이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국가건설기에 중국과 소련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다.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15) 김일성, “현국제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65~373.

16) 해방 직후 北韓人口의 大量 南韓移動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인구의 극심한 地域間 이동이 移出地로 환원되는 과정이었다. 1945년 10월부터 1947년 12월까지 북한지역에서 남한으로 돌아간 인구는 약 86만명으로 추정된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53~61.

초기에 드러낸 前向的인 女性政策은 女性解放을 社會主義 革命의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로 파악한 결과이기도 하면서¹⁷⁾ 동시에 女性을 政治的으로 動員할 필요성과 女性勞動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當代의 客觀的인 조건에 呼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原形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취한 「민주개혁」 가운데 첫 조치는 1946년 3월 5일에 발표된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었다.¹⁸⁾ 土地改革의 일차적 의의는 물론 기존의 階級關係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北韓政權의 政治的 聯合對象을 貧農 출신의 耕作者 중심으로 劃定한 사실에 있다. 그러나 同時에 그것은 가족관계의 사회주의화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토지개혁은 傳統的 家父長制의 物的 土臺가 붕괴하는 신호탄이었다. 동 「법령」이 공포된 지 사흘 뒤에 나온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은 토지분배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족수와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을 가진 者 數의 원칙”을 제시함

17) 金日成은 자신의 抗日遊擊隊 활동시절을 女性解放 실현의 역사적 先例로 인식하였다. 그에 의하면 항일유격대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는 男性들과 完全平等했으며, 그들은 모두 能力과 才能에 따라 혁명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김일성,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녀맹 1차 대표자회에 참가한 녀성일군앞에서의 연설, 1946년 5월 9일),”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06~219 볼 것. 아울러 박현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의 여성정책,” 김남식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5: 北韓篇」 (서울: 한길사, 1989), p. 455 참조.

18) 「김일성저작집 2」, pp. 101~104.

으로써, 가족성원의 노동능력이 개인별로 계산되어 여성들도 남성들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¹⁹⁾ 따라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家長의 經濟權을 분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이어서 1946년 6월 24일에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 공포되었다.²⁰⁾ “노동자 및 사무원들의 물질적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의 裏面에는 농민에 더하여 勞働者階級을 북한정권의 정치적 연합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意圖와 아울러, 土地改革을 통한 地主階級 해체의 연장으로서 資本家階級의 정치적 영향력을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동 「법령」은 또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특별한 關心을 밝히고 있는 바, 제7조에서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기술을 가진 로력자에게 연령과 성별을 불관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4조와 제18조에서는 産前産後 有給休暇制, 妊娠中과 解産後의 勞働生活에서의 특별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북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노동의

19)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男女間의 土地分配權이 완전한 兩性平等 원칙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分配 받을 수 있는 土地의 面積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男子의 경우 18세부터 60세까지가 기준점(1점)이 된 반면, 女子의 경우 남자보다 10년이 짧은 50세까지로 제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女性에 대한 차별화 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당시 農業技術 水準에 비추어 볼 때 남녀간의 현실적인 勞動力 差異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20) 「김일성저작집 2」, pp. 273~279.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이른바 사회주의 勤勞女性이 될 수 있는 法律的 條件이 갖추어졌다.

1946년 7월 30일에 공포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1946년 9월 14일에 발효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은²¹⁾ 家父長的 사회질서의 붕괴를 통한 女性解放과 女性的 勞動階級化를 보다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동 「법령」은 제1조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고 명기함으로써 反家父長的 지향을 분명히 했다. 동 「법령」은 또한 제2장에서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3장에서는 남자와 동등한 勞動權 및 報酬權과 아울러 동일한 社會保險 및 教育을 받을 권리를, 그리고 제4~5조에서는 自由結婚 및 自由離婚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6조와 제7조는 早婚, 一夫多妻制, 人身賣買, 公娼·私娼, 妓生制度 등 각종 여성인권 유린 사례를 禁止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남자들과 동등한 財產 및 土地相續權과, 離婚時 여성에 의한 재산 및 토지분배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한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세칙」은 여성들에게 각종·각급 公職을 맡을 수 있는 權利를 보장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虐待와 暴行 및 일체의 차별적 待遇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결혼관계의 소멸에 대해서는 自由離婚의 原則으로부터 人民裁判所의 결정에 의한 協議離婚 方式으로 ‘후퇴’했다. 이는 북한정권이 女性問題의 社會主義的 解決에 주력하면서도 이혼과 같은 가족의 해체에 관해서

21) 위의 책, pp. 327~328.

는 傳統的이고도 保守的인 인식을 답습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46년 8월 10일에 공포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은²²⁾ 工業과 商業分野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하는 첫 걸음이었다. 비록 동 「법령」 자체가 資本主義的 所有關係 一般을 완전히 清算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요 産業의 國有化 정책은 앞서 살펴본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과 함께 資本家階級의 物的 土臺를 약화시킴으로써 生産手段의 새로운 主人이 된 勞動者階級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資本主義的 工場制 生産樣式과 家父長制間의 歷史的 친화력을 감안하면,²³⁾ 産業施設의 國有化에 관한 상기 「법령」은 북한에서 일부 資本主義的 經濟構造에 연루되어 있던 家父長的 社會秩序를 타파하고 社會 전반에 대한 國家의 統制를 강화하는 계기의 일환이 될 수 있었다.

1946년 초부터 전개되었던 일련의 反帝·反封建民主改革은 1948년 9월 8일에 발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 의해 그 大綱이 완성되었다. 동 「헌법」 제11, 12조는 公民의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여하한 불평등도 부인함으로써 양성평등 원칙을 最高法의 권위로서 확정하였다. 또한 제22조는 특별히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남자와 동등

22) 위의 책, pp. 338~339.

23) Heidi Hartmann,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불 것.

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특별히 보호한다”고 規定하였고 제23조는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라고 명기함으로써 家族關係를 바탕으로 한 社會秩序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干與者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였다.

以上과 같은 法的 조치들에 덧붙여 북한정권은 가부장제의 소멸과 兩性同等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하였다. 그 가운데 첫째는 여성노동력의 社會的 引入을 지원하기 위한 社會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었다. 女性解放政策의 중심을 ‘근로여성들과의 사업’으로 규정한 김일성은 託兒所나 幼稚園의 건립을 통한 子女養育의 社會化를 일찍부터 강조하였다.²⁴⁾ 이에 따라 1946년에 평양에서는 國家資金으로 운영되는 ‘3·8 탁아소’가 등장했으며, 1947년 6월 13일에는 人民保健局 명령 5호로 「탁아소 규칙」이, 1948년 12월 2일과 23일에는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과 「녀성상담소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1949년 2월 1일에는 保健省 규칙으로서 「탁아소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는 등, 託兒所 建立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탁아소 건립에 관한 규정들의 주요 內容은 생후 1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幼兒를 國家 및 社會團體에서 경영하는 託兒所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탁아소 설치의 目的은 “로동녀성으

24) 김일성,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내린 결론, 1947년 10월 20일),”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88~495.

로 하여금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一次的이었다. 그러나 탁아소 운영을 통하여 政治社會化의 기능이 家庭으로부터 점차 國家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곧, 탁아소가 “정치,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데 방조”함으로써 가정의 傳統的 社會化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²⁵⁾

두번째는 여성의 역할을 政治的으로 적극 고무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女性 自身들이 주도하는 女性運動과 女性熱誠者의 육성을 줄곧 강조했다.²⁶⁾ 이에 따라 1945년 11월 18일에는 당의 외곽 사회단체로서 朝鮮民主女性同盟(女盟)이 창립되었다. 이 여성조직은 女性의 思想的 革命化와 階級敎養을 기본으로 한 공산주의 정치교육 등을 담당하여 男女平等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自發的인’ 노력에 앞장섰다. 북한정권은 또한 여성들의 政治生活 進出을 의도적으로 지원했다. 1946년 11월에 실시된 道·市·郡 人民委員會 委員選舉에서 여성 몫으로 10~15% 持分을 事전에 組織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 결과 동 선거에서 女性은 13%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²⁷⁾ 일제시대 한국여성들이 거의 高等教育을 받지 못했고 대부분이 文盲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解放 1년여 만에 女性의 選出

25) 북한의 여성정책과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에 관해서는 이운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法文社, 1993), pp. 220~229 참조.

26) 보기로 김일성, “녀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 및 “녀성동맹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참조.

27) 「김일성저작집 3」, p. 15.

職 公職 保有가 10%를 上廻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北韓은 解放 직후 몇년 동안에 社會主義 原則에 입각하여 가족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 수십년 이상 걸려서 이를 수 있었던 男女平等權의 실현이 북한에서는 권력지도부의 의지로서 短期間에 그리고 용이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그리고 이와 같은 法的·制度的 조처들은 북한에서 “그 이후 40년을 통해 수행된 제반 女性政策 전체보다 質이나 量에 있어 더 다양하고 철저”했던 것이 사실이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전통적 가족관계가 실제로 완전히 解體되었을 것이라는 斷定은 留保되어야 한다. 女性의 勞動階級化가 실제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는 稀薄하거나 단편적이며, 女性의 政治的 進出이 실질적인 女權 향상으로 귀결되었을 가능성도 의문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法社會學的 觀點에서 볼 때 가족관계나 性別 役割 변화에 대해 法的 강제나 行政的 規制가 행사할 수 있는 影響力은 다른 부문의 社會變動에 대한 것보다 훨씬 非效率的인 것이다.³⁰⁾

28) 김선옥 외, 「北韓女性의 地位에 관한 研究—女性關聯 法 및 政策을 중심으로」(서울: 韓國女性開發院, 1992), p. 37.

29)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서울: 한울, 1991), p. 78.

30) Dietrich Rueschemeyer and Peter Evans,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oward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Underlying Effective Intervention,” P. Evans, D.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數千年을 내려온 전통적 家族制度가 수년에 걸친 「민주개혁」으로 一掃될 수는 없다. 결국 ‘평화기간’ 동안의 反帝·反封建 社會革命은 하부구조로서의 封建的 및 資本主義的 階級關係와 上部構造로서의 家父長的 家族關係를 동시에 해체하려는 첫 걸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개혁」의 보다 실질적인 의의는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國家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原子化’된 人民을 직접 상대하고 동원할 수 있는 政治的 條件을 장악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2. 韓國戰爭과 家族制度의 變化

戰爭과 國家建設間의 역사적 친화력은 “국가가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는 말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³¹⁾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비록 북한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沮害 要因 혹은 試鍊期로 해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이 北韓式 社會主義 國家를 건설하는 ‘促進 變數’(reinforcing variable)로 작용하였음을 경험적으로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 70.

31)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3~83 in C.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전상인, “틸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서울: 열음사, 1992), pp. 97~119.

否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³²⁾ 무엇보다 韓國戰爭은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는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당과 전체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었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잘 말해주고 있다.³³⁾ 韓國戰爭은 또한 결과적으로 封建的 및 植民地的 下部構造와 그에 연루된 上部構造의 清算作業을 가속화하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가족관계 역시 例外가 아니었다. 韓國戰爭은 북한의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더욱 더 빠른 속도로 해체시켰다. 3년간의 전쟁 진행과정을 통하여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戰場으로 삼았으며, 남한보다 북한지역을 더욱 더 焦土化시켰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전통적인 戶籍臺帳이 대거 流失되어 가족제도의 法的 根據가 크게 미약해졌다. 더구나 大量의 人命損失로 인해 북한의 경우 缺損家庭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예컨대 전후 女性家長(소위 戰爭未亡人)의 수가 약 40만명에 달했으며, 離散家族의 비율도 북한의 경우 25% 가까이 이르렀던 것이다.³⁴⁾ 또한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難民移動(refugee migration)은 家族單位의 核家族化를 촉진할 수 밖

32)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당과 인민대중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pp. 329~359.

33)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318.

34) Hyo-Jae Lee, “National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no. 8, pp. 4~18.

에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전통적인 大家族制度가 약화될 蓋然性은 매우 높았으리라 추정된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解體와 缺損家族의 증가는 國家에 의한 주민 生活保護 責任의 증대라는 豫想 밖의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쟁은 또한 북한의 勞動力 不足現象을 더욱 深化시켰다. 한국전쟁에 의해 초래된 북한의 人口 손실은 당시 총인구 950만명 가운데 민간인 200만, 군인 50만 등 모두 250만명 정도로 推計되고 있으며³⁵⁾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인구도 약 65만명에 이른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³⁶⁾ 死亡者 가운데 물론 男子가 女子보다, 그리고 成人이 노년이나 유아보다 많았을 가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人口의 감소 및 移動에 따른 북한 勞動力의 流失과 아울러 土地와 工場 등 생산수단의 대량 破損 역시 北韓經濟를 疲弊化시키기에 충분했다.³⁷⁾ 결국 韓國戰爭 기간 동안 生産設備의 파괴가 순수 勞動力의 動員 필요성을 이전보다 크게 증대시킨 반면, 勞動力의 실제 供給力量은 전쟁에 의해 오히려 감소하고 말았던 것이다.

35) Jon Halliday and Bruce Cumings,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p. 200.

36) 전광희, “韓國戰爭과 南北韓 人口의 變化,”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pp. 60~92.

37) 북한에서는 韓國戰爭에 의한 被害狀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쟁으로부터 “도시와 농촌은 재더미로 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여지없이 파괴되었으며 인민들의 생활토대도 거의 다 마사졌다. 전후복구건설을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형편은 어려웠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21.

그러나 북한의 社會主義的 家族政策에 關係해서 볼 때 韓國戰爭이 남긴 順機能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앞서 지적한대로 戰爭에 의해 전통적 大家族制가 '실질적으로' 붕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社會的 진출과 家族關係에 있어서 女性의 地位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북한정권에게 하나의 好機로 작용하였다. 마치 兩次 세계대전이 구미 각국의 여성해방과 가족구조 변화에 획기적인 영향을 남긴 것처럼, 北韓에서도 韓國戰爭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轉機가 되었던 것이다.

1951년 8월 15일 김일성은 戰時生産을 보장하는 북한여성들을 “오늘 후방의 주인”이라고 불렀다.³⁸⁾ 北韓女性들은 戰線에서 위생병 혹은 통신병으로 인민군 대열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後方의 生産施設에 노동자로서 진출하여 戰時生産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53년의 경우, 勞動者·事務員 중에서 女性의 수는 16만 5천여명으로서 그 비율이 26.2%에 이르렀다고 한다.³⁹⁾ 이 비율은 전후인 1955년의 19.9%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서 戰時에 북한의 女性勞動力 동원이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또한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광범히 농업전선으로 진출한 전체 농촌여성

38) 김일성, “전선원호사업은 녀맹원들의 중요한 임무(녀맹일군들과 한 담화, 1951년 8월 15일),” 「김일성저작집 6」(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445~452.

39)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1), p. 208.

들의 영웅적투쟁”이 널리 선전되기도 했다.⁴⁰⁾

한편, 한국전쟁으로부터 극심한 人的·物的 피해에 의해 북한은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개조가 한편으로는 容易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不可避한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下向的 계층분화가 가속화되어 農業協同化에 대해 정서적으로 호의적인 분위기가 나타났고, 農業 生産手段의 改進黨은 共同耕作이나 협동영농 등을 객관적인 생활상의 요구로 바꾸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戰時經濟 체제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각종 사회주의적 協同經理의 경험도 戰後 農業 및 上공업의 全面的 社會化에 유리한 조건으로 作用했다.⁴¹⁾ 결국 生産關係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下部構造의 변화는 家族制度와 같은 上部構造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社會的 條件을 제공한 것이다.

4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1~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 466.

41)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손호철 외, 「韓國戰爭과 南北韓社會의 構造的 變化」(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159~201; 강정구, “韓國戰爭과 北韓社會의 社會構造 變化,” 고병철 외, 「韓國戰爭과 北韓社會主義體制建設」(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163~198.

第 IV 章 社會主義 發展期の 二重的 家族政策

北韓歷史에 있어서 韓國戰爭 이후 1970년대까지는 社會主義 發展期라고 볼 수 있다. 戰後 1950년대는 戰後복구건설과 社會主義 基礎建設을 수행한 시기로서, 북한의 자체 評價에 의하면 “생산관계의 社會주의적 개조가 끝나고 公業화의 토대가 축성”되고, “당 발전의 견지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宗파를 淸산하고 우리나라 公産주의운동의 完전한 통일”이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사업에서 主體 확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매우 강화”된 시기였다.⁴²⁾ 또한 1960년대는 “당의 唯一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결정적투쟁이 전개”된 시기였으며, 1970년대는 “주체위업의 계승문제, 政治적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전당과 온 社會의 主體사상화를 전면에 제기”한 때였다.⁴³⁾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한편으로 女性의 勞動階級화와 함께 家事 및 家庭의 社會주의적 改造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金日成 唯一支配體制의 形成과 金正日 後繼體系의 준비작업을 통해 國家적 수준의 家父長制가 등장한 것도 事實이었다. 물론 家父長的 統治體制의 구축을 家族政策 그 自體로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을 統治 모델로 한 유기체적 家族國家觀이 전통적 가족관계를 이념적으로 부활시켰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에

4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92.

43) 위의 책, pp. 426, 525.

서는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했다. 그리하여 社會主義 發展期 北韓에서는 家父長的 가족원리와 사회주의적 가족정책이 병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 經濟發展과 社會主義的 家族政策

가. 女性의 勞動階級化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북한은 生産手段의 集團化 및 國有化를 근간으로 한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하여 1958년에 사업을 완수하였다.⁴⁴⁾ 가족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생산단위로서의 家族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을 뜻한다.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아울러 전쟁 이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되던 私有制를 완전 철폐하였고 相續制도 덩달아 소멸시켰다. 상속제의 폐지는 북한에서 봉건적 가족제도의 물질적 기반을 崩壞시키는 附加的인 조치가 되었다. 또한 1955년 3월 5일에 발표된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戶籍制가 폐지되었다. 호적제의 철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戶籍文書 소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탱하던 마지막 法的 裝置가 마침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서 북한의 가족제

44)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개조의 完成에 대하여 북한은 “전후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그리고 철저히 수행”했다고 評價하고 있다. 위의 책, p. 359.

도는 1950년대에 들어와 봉건적 舊殼을 크게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⁴⁵⁾

相續制와 戶籍制의 폐지를 통한 家族制度의 革命化는 여성의 革命化와 동전의 양면같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女性의 혁명화는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함께 女性意識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金日成은 경제적 복구와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로력을 광범히 인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金日成은 女性의 경제활동 참여는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⁴⁶⁾ 결국 북한에서 “여성로력을 사회주의건설에 끌어들이는 것은

45) 그러나 傳統的인 家族關係의 붕괴는 一時的으로 예상 밖의 사회적 副作用을 초래했다. 과거에 비해 離婚이 무절제해지고 家庭破綻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子女養育 등의 측면에서 국가의 扶養 부담이 증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정권은 1956년 3월 8일에 「협의리혼을 폐지하고 재판리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을 발표하여 離婚希望者에게 일정한 費用을 부담시키고 離婚節次를 복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혼인관계의 消滅을 어렵게 하였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p. 91; 이와 같은 離婚要件의 강화는 1946년에 이미 自由離婚制에서 協議離婚制로 바꾼데 이어 북한이 결혼에 관한 한, 또 한차례 가부장적 사회질서로 후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형, “北韓社會體系와 家父長制”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p. 12 참조.

46) 김일성, “녀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녀맹 제3차대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일),”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423~434.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여성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 등 다용도를 지닌 것이었다.⁴⁷⁾ 그러나 여성 혁명화 政策의 主軸은 女性의 노동계급화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産業·勞動政策: 보다 많은 女性을 사회주의 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國家的 誘引策의 골간은 우선 産業 및 勞動政策의 재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地方工業을 육성하여 工場施設이 여성 遊休勞動力을 직접 찾아나서는 것,⁴⁸⁾ 重工業과 輕工業을 같은 地域에 동시에 배치하여 同一 地域에서 남성들을 重工業에 종사시키고 부양 女性勞動力을 輕工業에 취업시키거나, 남녀 노동력의 再配置를 통해 事務職과 輕工業 분야의 女性就業 비율을 一定 水準 이상으로 높이는 것,⁴⁹⁾ 그리고 家內作業班 또는 家內協

47)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94.

48) 김일성은 1958년 5월 11일, 량강도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한다면 늘고 있는 여성들을 다 거기에 받아들일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79~280 참조. 이어서 1958년 6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地方工業의 육성을 決定하였다. 그리하여 3개월 사이에 1,000여개의 지방공장이 설립된 것에 이어 1960년에 이르러서는 全國 工業總生産의 39%, 全國 所費品生産總額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지방공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 pp. 174~175 볼 것.

49) 이는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의 남성노력을 여성들로 점차

同組合을 조직하여 職場에 나갈 수 없는 女性들의 勞動力을 활용하는 事業⁵⁰⁾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晚婚獎勵政策: 法的으로 북한의 혼인가능 연령은 男子 18세, 女子 17세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結婚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초래하는 여성노동력의 流失을 감소하기 위해 北韓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적령기를 늦출 것을 사회적 美德으로 장려하였다. 1971년 6월 21일에 열린 社勞靑 6차대회가 남자 30세, 여자 27세 이상에서 婚姻할 것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金日成 역시 1971년 10월 7일 女盟 제4차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녀성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생활에 파묻히지 말고 시집을 좀 늦게 가더라도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도록” 요구했다.⁵¹⁾

교체하는 것으로, 1962년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남녀로력 교체작업’은 여성을 경노동분야에, 그리고 남성을 중노동분야로 집중시켰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234 참조. 또한 김일성,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녀맹 제4차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0월 7일),” 「김일성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377~402 참조.

50) 家內作業班 또는 家內協同組合의 조직은 주로 55세 이상의 여성들을 비롯한 扶養家族의 遊休勞動力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정책이었다. 1960년말 현재 가내작업반에 소속된 여성 부양가족은 22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 p. 195.

51) 김일성,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참조.

母性保護政策: 生産要素 가운데 노동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북한이 노동력의 再生産을 담당하는 여성을 배려할 목적으로 母性保護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은 하등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母性保護政策의 기초는 1940년대 말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김일성도 몇차례에 걸쳐 여성노동력의 保護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때 그는 여성의 노동계급화가 北韓의 전반적인 勞動力不足現象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의 勞動者意識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⁵²⁾ 특히 1978년 4월 18일에 制定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로동법」은⁵³⁾ 여성노동자에 대한 有害勞動禁止 및 文化衛生的 勞動條件의 具備(53조), 일반여성 및 妊産婦의 건강보호(58조), 그리고 충분한 출산관련 휴가(66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북한이 多胎分娩女性과 多子女 母性勤勞者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女性の教育·訓練支援政策: 북한은 關聯 法規程에 남녀간 교육기회의 平等을 명문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教育機會 增

52) 김일성이 “놀고 먹는 사람은 공산주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자녀와 식구가 많은 경우, “8시간 노동이 아니라 6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다”라고 말한 것은 그 한 보기이다.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11월 16일),”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26~353 및 김일성, “녀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불 것.

53) 「김일성저작집 3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85~200.

大를 위해 별도의 정책적인 배려를 附加하였다.⁵⁴⁾ 소위 ‘여성들의 인테리화’ 정책은 여성들의 科學技術 수준을 대학졸업 程度로 높여 남녀사이의 문화지식 수준의 차이를 없앴으로써 여성의 就業機會 확대와 여성노동력의 質的 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⁵⁵⁾ 특히 앞에서 말한 남녀노동력의 合理的 재배치정책에 발맞추어 學校教員이나 保健·醫療人力的 대다수를 여성으로부터 충원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재조정했는가 하면, 근로여성들을 위한 성인교육 사업에 관심을 돌려 여성들이 한가지 이상 전문화된 技術을 소유하도록 배려했다. 또한 여성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여성학자’와 같은 女性高級人力的 배양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나. 家事 및 家庭의 社會主義的 改造

女性の 경제적 活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성을 子女養育 및 家事勞動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김일성은 “우리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지어주는데 전국가적·전사회적 관심을 돌려야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⁵⁶⁾ ‘가정의 혁명화’를 ‘여성의 혁명화’를 위한 前提條

54) 본사기자,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여성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조선여성」(1992. 2), pp. 11~12.

55) 김일성, “여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pp. 385~387 참조.

56) 김일성,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보장할데 대하여(당, 정권기관 지도일군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앞에서 한 연설, 1965년 5

件化했다. 특히 1972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제62조에서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였고,⁵⁷⁾ 197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로동법」 역시 제31조에서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⁵⁸⁾

다른 現存 社會主義 國家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子女養育 및 家事勞動의 社會化를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지원했다. 그러나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의 勞動階級化에 연관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政治社會化를 早期에 추진하여 가정에서 행해지는 ‘낡은 사상과 습관의 전승’을 불식하는 대신,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幼年期에서부터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곧, 託兒所와 保育院, 그리고 幼稚園 등의 확충을 통해 취학전 아동을 집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찍부터 공산주의적 思想教育과 道德教育을 주입시키고자 한 것이다.⁵⁹⁾

월 25일),” <현시기 국가경제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가운데, 「김일성저작집 19」, pp. 363~367.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625~649.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로동법」, 「김일성저작집 33」, pp. 185~200.

59) 이에 대해 金日成은 사람들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교양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교육부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8

또한 가사노동의 社會化는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集團生活의 규범을 일상적으로 內面化하도록 하는 효과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일성의 주장대로 “가정의 혁명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와 뗄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⁶⁰⁾

子女養育의 社會化政策: 아동의 사회적 集團養育制는 託兒所와 幼兒院의 발달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金日成은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託兒所와 幼兒院 시설의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⁶¹⁾ 탁아소의 설치 필요성은 建國 초기부터 이미 강조되어 전후에 그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종류도 다양해졌고, 따라서 1960~1970년대에는 相對的으로 유아원의 설립이 강조되었다. 특히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제43조에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76년 4월에 제정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외국인이 북한을 “어린이왕국”으로 부러워할 만큼 “가장 선진적인” 것이라고 선전되었다.⁶²⁾ 그러나 탁아

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38~68.

60) 김일성, “간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0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44~185.

61) 보기로 김일성, “녀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등 참조.

62) 리재숙, “녀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

소 및 유아원 설치를 통한 子女養育의 社會化가 차지하는 또 다른 의미는 어린이들을 “충성동아, 효자동아”로 만들어 일찍부터 體制에 순치시키는 것이었다.

家事勞動의 社會化政策: 흔히 ‘가정의 기술혁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1950년대말 食料加工工業의 발달에 대한 강조를 필두로 시작되었다.⁶³⁾ 이는 된장과 김치를 포함한 주요 食料品 및 嗜好品을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함으로써 가사부담을 집단화·공동화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1960년대부터는 상점, 병원, 세탁소, 이발소 등의 사회적 봉사시설에 대한 이용편의를 합리적으로 제고하는 이른바 家事勞動의 서비스産業化가 추진되었다.⁶⁴⁾ 한편,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職場과 家庭에서 행해지는 여성들의 이중노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냉장고와 세탁기

도를 마련해주시어,” 「조선여성」(1991. 5), pp. 10~11.

63)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총화를 위한 경공업성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食料加工工業의 중요성이 “여성들을 부엌에서 해방”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p. 2~10; 1958년 7월 11일에 발표된 「내각결정 81호」〈식료품 가공 및 일용품 생산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는 따라서 金日成의 指示에 의거하여 家事勞動의 社會化를 촉구하는 문건이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9」, pp. 101~107.

64) 김일성, “녀맹조직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및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보장할데 대하여,” 참조.

등 현대적인 가정용품과 부업세간의 공급증대를 통한 이른바 가사노동의 商品化를 추진하기도 했다.⁶⁵⁾ 이와 같은 가사노동의 社會化政策은 가정내 성별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다. 社會主義的 家族政策의 評價

전후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사업체에서 여성종업원의 수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비록 散發的이기는 하지만 북한 當局이 발표한 통계수치를 종합해 보면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의 경우, 전체 在籍從業員 數 62만 8천명 가운데 여성노동력이 16만 5천명으로 26.2%를 차지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말부터 여성종업원 비율이 30%를 상회했으며, 1960년대 초에 1/3을 훨씬 넘긴데 이어 1964년에는 40%에 육박했다.⁶⁶⁾ 1971년에 김일성은 당시 공업부문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45.5%라고 주장했으며,⁶⁷⁾ 1976년에 가서는 인민경제 노력구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고 발표했다.⁶⁸⁾ 의심의 여지없이 이는

65) 리재숙,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주시려고,” 『조선여성』 (1991. 6), pp. 4~5.

6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 p. 341; 『조선중앙년감 1962』, p. 264; 『조선중앙년감 1963』, p. 234; 『조선중앙년감 1964』, p. 200; 『조선중앙년감 1965』, p. 164 참조.

67) 김일성, “여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할데 대하여.”

68) 김일성, “어린이 보육보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최고인

전체 人口의 性比에 거의 접근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사회적으로 支援하는 대표적인 制度인 託兒所와 유아원 발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北韓의 탁아소 숫자는 1953년에 1,711개, 1955년에 1,878개로 늘어났고 1956년에는 획기적으로 3,684개소에 이르러 1949년에 對比하여 무려 18.7배로 증가했다.⁶⁹⁾ 탁아소 보급이 일단락된 다음 북한은 유치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1956년에 173개에 불과하던 유치원 숫자를 1963년에는 5,667개로 늘렸다. 1964년 현재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망라된 어린이 숫자가 모두 149만 5천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⁷⁰⁾ 1971년에 김일성은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탁아소와 유치원이 많은 나라는 드물것”이라고 자부하기에 이르렀다.⁷¹⁾ 1976년 현재 북한에는 6만여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운영중이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는 모두 350만명으로 알려졌다.⁷²⁾

그러나 여기서 北韓女性の 勞動階級化와 育兒 및 家事의 社會化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데는 다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4월 29일),”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81~87.

69)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p. 103.

7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7」, p. 107; 「조선중앙년감 1964」, p. 204; 「조선중앙년감 1965」, p. 167 참조.

71) 김일성, “여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할데 대하여.”

72) 김일성, “어린이보육보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우선 여성의 經濟活動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완전한 男女平等의 실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듯이,⁷³⁾ 북한 역시 女性의 問題를 性別 平等의 관점에서 보다는 階級論的으로 還元하여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곧, 女性勞動力이 教育部門과 보건부문, 상업부문, 경공업과 사무직 등 ‘軟性職種’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성의 身體的·心理的 特性에 대한 固定觀念의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직종에 따른 임금격차를 감안할 때 남녀간의 平均賃金 차이도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⁷⁴⁾

또한 子女養育의 社會化政策에도 불구하고 育兒에 관한 ‘어머니 책임’의 강조는⁷⁵⁾ 여성의 二重的 부담이 尙存함을 의미했다. 곧, 再生産關係의 根本的인 變革없는 社會主義 이행은 여성의 ‘반쪽 革命’에 불과했던 것이다. 아울러 家事의 社會化정책 역시 제한된 地域과 範圍에서 실행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⁷⁶⁾ 母性保護政策 역시 노력경쟁운동과 責任量 완수 등의 부담 때문에 目標와 實際

73) Shirin Rai, Hilary Pilkington and Annie Phizacklea, eds., *Women in the Face of Change: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2~5 참조.

74)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梨花女子大學校 韓國女性研究所 統一問題 學術세미나, 1992. 11. 30) 참조.

75) 예컨대 金日成은 1961년 11월 16일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연설,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 가정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76)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사이의 괴리현상이 많이 나타났다.⁷⁷⁾ 결국 북한은 女性들에게 社會的 活動을 통한 公的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家庭 내에서의 전통적인 아내·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그리고 훌륭히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수퍼우먼의 모델’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金日成 唯一體制의 確立과 有機體的 家族國家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추진된 사회주의적 가족정책의 內在的 限界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國家 가부장제의 형성에 의해 더욱 더 두드러졌다. 북한은 社會主義 經濟發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해방과 가족관계의 脫家父長的 개조를 지향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봉건적 가부장제를 國家的인 水準에서 대거 復活시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후 북한의 家族政策에는 社會主義 원리와 유교적 家父長制가 이율배반적으로 공존·결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의 등장과 國家權力的 擬人化는 家族을 메타포로 한 有機體的 國家觀을 북한사회에 주입시켰고, 가족은 통상적인 사회의 ‘단위’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細胞’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서 국가 가부장제가 형성되는 과정은 김일성 一人의 支配權力 공고화와 주체사상의 등장, ‘革命的 首領觀’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個人 및 一家에 대한 카리스마적 偶像化 및 ‘後繼者論’으로 이어지

77) 김선옥 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p. 79.

는 권력의 代물립 정책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직접적인 家族政策은 아니다. 그러나 有機體的 家族國家觀은 個別家族의 존재근거와 機能을 가족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強化하였다.

가. 唯一支配體制의 構築과 主體思想

북한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사실에 그 국내정치적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정치적 위기상황을 오히려 權力獨食을 위한 기회로 활용한 김일성의 企圖는 성공적이었다.⁷⁸⁾ 그는 ‘敗戰’의 책임전가를 통하여 政敵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였는데, 전쟁 중에는 연안파의 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승엽과 박헌영 등 국내파 혹은 남로당계가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제거되었다. 蘇聯에서 스탈린 格下運動이 벌어지고 중국과 소련간의 이념분쟁이 시작될 무렵에 발생한 북한 권력층의 動搖도 김일성은 효과적으로 克服했다. 1956년에 발생한 이른바 ‘8월종파사건’은 북한에서 김일성 唯一支配體制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의미있는 權力葛藤이었다.⁷⁹⁾

78)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95~120; 고병철, “韓國戰爭과 北韓政治體制의 變化,” 고병철 외, 「韓國戰爭과 北韓社會主義體制建設」, pp. 1~28.

79) 김일성은 1958년 11월 20일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전후 김일성이 權力을 장악하는 것에 발맞추어 북한에서는 주체라는 이름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1955년에⁸⁰⁾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처음으로 개진하였다.⁸¹⁾ 이 연설의 골자는 革命의 方式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理論이나 모델이 아닌 ‘조선의 혁명전통’을 이어 받자는 것과, ‘혁명적 군중관점’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주체사상은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직면하였던 정치적 挑戰, 국제정세적 危機, 경제적 試鍊 등을 最終적으로, 그리고 가장 抽象的인 수준에서 극복한 결과였으며, 그 이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不變的 기본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靑寫眞으로 등장했다.⁸²⁾

1960년대에는 사상에서의 主體, 정치에서의 自主, 경제에서의 自立, 그리고 국방에서의 自衛가 주체사상의 4대 기본노선으로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그 이면에서 주체사상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완성되어갔다. 1967년 5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

강습회에서 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통해 ‘反黨·宗派分子’의 去勢와 자신의 正當性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김일성 저작집 1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580~606.

80)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42.

81)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7~495.

82) 전상인, “잃어버린 革命, 흔들리는 理念: 韓半島 社會主義 運動 100년의 回顧와 評價”(韓國地域研究協議會 '93년도 통일교육연구 발표논문, 1993. 4. 11), p. 30.

회의는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⁸³⁾ 그 해 7월 6일 김일성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결”할 것을 요구했다.⁸⁴⁾ 이어서 1970년 11월 2~13일에 열린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했다.

戰後 1950년대에 發源한 주체사상이 1960년대에는 ‘당내’ 유일사상으로 정착되었다면, 1970년대는 주체사상이 全國的·全社會的 수준으로 확산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공고화”를 주장했으며,⁸⁵⁾ 1972년 12월 27일에 公布된 「사회주의헌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明記했다. 동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國家主席制를 신설하여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적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게하는 국가기관체계”를 구축하였다.⁸⁶⁾

83)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32.

84) 김일성, “간부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5」, pp. 144~185.

85) 金日成이 1970년 11월 2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 pp. 232~256.

86)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68.

주체사상을 국가·사회적 차원의 唯一 이데올로기로 정착시키는 사업의 主役은 金正日이었다. 김정일은 이미 1967년 6월에 주체사상에 의한 黨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강조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곧 수령님의 사상체계”라고 주장했다.⁸⁷⁾ 특히 1973년부터 김정일이 發起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주체사상을 擴散하는 결정적인 社會運動이 되었다. 1974년 2월에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黨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했으며,⁸⁸⁾ 같은 해 1974년 4월 14일에 조선로동당 제5기 제9차 黨중앙위 전원회의 결의형식으로 채택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주체사상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等式化했다.⁸⁹⁾

주체사상은 처음 제기된지 20년내에 북한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定着했다. 그것은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를 合理化·正當化하는 통치이념에서 출발하여 점차 黨과 국가, 그리고 마침내 전사회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의 經濟, 外交, 軍事 등 전분야에 걸친 教條的 강령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북한의 정치권력을 擬人化하고 김일성을 不

87)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黨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I」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230~240.

88)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474~475.

89) 金正日이 提示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팜플렛 형식의 黨內 內部文件으로서 「김정일선집」 등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動의 절대권력자로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주체사상은 또한 ‘수령론’과 ‘후계자론’으로 연계되면서 북한을 有機體的이고도 家父長的인 家族國家로 만들고 개별 가족을 “사회의 세포”로 재구성하는 理論的 基盤이 되었다.

나.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에서의 家族國家觀

김일성 唯一支配體系 및 주체사상의 發展過程에서 북한의 家族制度와 관련하여 의미있게 제기되는 內容은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戰後 社會主義 건설전략의 측면에서 북한이 ‘혁명적 軍중관점’을 확립하여 自力更生의 원칙하에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로 결정한 바탕위에서,⁹⁰⁾ 唯一的 領導者의 위치를 차지한 수령이 바로 그러한 革命性의 발원지라는 認識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이 歷史發展과 革命鬭爭에

90) 1956년 4월 23~29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혁명적 軍중관점’을 확립함으로써 그 해 8월의 소위 ‘8월중과사건’에 대처했고, 같은 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經濟建設에 대한 黨의 領導를 확인하고 自力更生의 원칙과 革命的 群衆路線의 貫徹를 통하여 社會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발원할 것을 결의했다. 조선중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45 참조; 김일성 역시 1956년 1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승패는 “혁명적 軍중관점을 바로세우고 軍중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404~415.

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無條件的이고 항구적이며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음으로써, 人民大衆이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⁹¹⁾ 곧, ‘혁명적 수령관’의 根本要求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었다.⁹²⁾

‘혁명적 수령관’의 당사자인 김일성에 대한 絶對的인 服從과 忠誠에 관하여 가장 熱誠的으로 나선 이는 그의 長子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등을 포함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바로 金正日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실 일념”을 전제로 한⁹³⁾ ‘혁명적 首領觀’의 다음 순서는 자연히 “수령

91)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388, 602.

92) 위의 책, p. 603.

9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의 사상을 절대적지침으로 하여 ...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의 唯一領導體系를 지향하는 것이었다.⁹⁴⁾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령도자”로서 수령은 人間 유기체의 頭腦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고, 당과 인민대중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忠誠과 孝道를 바침으로써 首領과 더불어 하나의 統一體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1970年代 이후 북한에서는 家族을 메타포로 한 有機體的 國家觀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유기체적 국가이론의 특색은 價値志向的이고 規範的이라는 사실이다.⁹⁵⁾ 그리고 부분은 항상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構造機能主義的 社會認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령이 人體의 활동이나 家族의 기능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 연유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人體로 따지면 頭腦 혹은 心臟에 해당하고, 가족관계에 비유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黨은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血管으로 볼 수 있으며 가정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人民大衆은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의 영도 밑에서 혁명투쟁을 담당·수행하는 자식과 같은 존재로서 인식된다. 그 결과 북한의 인민대중은 ‘새끼 김일성들’(little Kim Il Sung)이 되는 셈이다.⁹⁶⁾

324~326.

9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p. 388.

95) Alfred Stepan,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p. 26~40.

그렇다면 ‘혁명적 수령관’에 의거한 家庭의 의미는 무엇인가? 1972년에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제63조에서 家庭을 “社會의 細胞”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家庭은 사회를 구성하는 통상적인 ‘단위’가 아니라 국가와 生物學的으로 共生하고 있는 ‘細胞’라는 것에서 존재 의의를 찾는다. 그리고 북한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적, 인간적 애정에 기초하여 “소유권과 상속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모순, 인신적 예속관계”로 얽혀 있는 계급사회에서의 그것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주장된다. 勤勞人民大衆이 꾸려가는 家庭은 오히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지향과 념원, 고상한 동지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며,⁹⁷⁾ 나아가 “참다운 가족관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려는 숭고한 리념과 뜨거운 동지애, 건전한 애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⁹⁸⁾

首領論을 중심으로 정립된 有機體的 國家論이 북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사실상 유기체적 국가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西洋政治思想의 한 支派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족주의적 정치·사회관은 맑스-레닌식의 정통 社會主義 理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家族國家觀은 한국 傳來의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速

9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303.

97)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p. 41.

98) 위의 책, p. 42.

斷하기 쉽다. 그러나 儒敎文化的 遺産 그 자체가 북한식 가부장제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首領論이 강조하는 바 ‘혁명성’이나 ‘대중노선’은 워낙 孔子의 통치철학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가부장적 정치이론이 강조하는 革命的 群衆路線은 오히려 毛澤東의 大衆路線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⁹⁾

‘혁명적 수령관’보다 더욱 獨特한 것은 北韓의 ‘후계자론’이다. 북한에서 首領의 후계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理由는 “수령의 혁명위업이 장기성을 띠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 위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¹⁰⁰⁾ 그리고 金日成은 後繼者로서 그의 長子 김정일을 지목하고 1970年代 초부터 權力承繼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후계자론’에 의하면 金正日이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血緣的인 世襲이 아니다. 後繼者가 필요한 이유가 ‘혁명위업 계승의 필연성’인 만큼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단순한 父子關係에서가 아니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수령이 지니고 있는 모든 위대하고 비범한 사상, 정신적 품모와 특질을 체득”하고 있는데서 찾아졌다고 설명한다.¹⁰¹⁾ 그리고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성, 혁명의 간고성 및 복잡성을 감안하면, 혁

99) Bruce Cu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4 (1982/1983), pp. 269~294. 커밍스는 북한체제를 ‘조합주의적 사회주의’라고 규정했다.

100)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p. 384.

101) 위의 책, p. 384.

명위업의 계승문제는 단순히 지도자 혹은 人物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領導가 하나의 制度로서 전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계자론’의 다음 順序는 당연히 수령에 대한 충성과 그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同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전형이며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혁명의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¹⁰²⁾ 아울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으로 간직하는 것은 수령에게 영원히 충성을 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일 뿐 아니라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³⁾

‘後繼者論’의 확립을 통해 가부장적 성격의 북한 통치체제는 극명해졌다. 사실상 정치권력의 族內傳受는 사회주의이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後繼者論’에 입각한 북한의 國家 家父長制는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類例가 없는 것이다. 혁명위업의 계승이라는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부자세습은 사실상 北韓이 근대국가로부터 前近代의 王朝體制로 回歸함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 가족제도에서도 儒敎的 權威關係를 精神的으로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革命的 首領觀’과 ‘후계자론’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족관계의 정치적 復元이 사회

102) 위의 책, p. 386.

103) 위의 책, p. 381.

주의 원리와背馳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고찰하면, 김일성의 카리스마화 혹은 家門의 神格化는 北韓의 統治構造가 朝鮮時代에서와 같은 전통적 왕조체제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金日成과는 달리 朝鮮朝의 왕들은 神格화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위치를 결코 누리지 못했다.¹⁰⁴⁾ 어떤 면에서 볼 때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형성된 가부장적 神政國家는 일제 군국주의 문화의 잔재인 天皇制와 유사성이 더 깊어 보인다. 이와 같이 神格화된 家父長的 統治構造는 1980년대 이후 北韓 經濟發展의 하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한 原因을 제공했고, 북한의 家族政策이 점차 脫社會主義化하는 政治的 條件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04)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p. 1~16.

第 V 章 社會主義 沈滯期 家族政策의 脫社會主義化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1980년대는 韓國戰爭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기로 다가왔다. 북한은 1980년대 前半期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공세가 강화되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자본주의적방법에 의거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진 복잡한 정세”로 인식했고, 특히 1980년대 後半에 대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른바 <평화적이행>전략을 들고나와 사회주의 나라들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한 時期로 규정하고 北韓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심각한 좌절과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¹⁰⁵⁾

이와 같은 對外情勢的 위기와 더불어 1980년대 이후 北韓은 경제적 침체상황의 지속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은 당면한 國家的 과제의 最優先을 金正日 후계체계의 공고화에 두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情況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은, 사회주의적 原理가 크게 후퇴하는 대신 家父長制 혹은 家族主義가 빠른 속도로 부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사회정치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概念은 가부

105)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552, pp. 583~584.

장적이고 有機體的인 國家觀을 가일층 교조화한 것이며, 慢性的인 經濟沈滯에 따른 失業率의 증대와 사회경제적 不滿의 고조는 여성의 再家庭화와 家族主義의 復元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1990년 10월에 제정된 북한의 「가족법」은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가족정책이 脫社會主義化하는 조짐을 드러냈다.

1. '사회정치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1970년대 말까지 주체사상은 基本的으로 맑스-레닌주의의 範疇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 10월 10~14일에 개최된 로동당 제6차 당대회는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 시위”하면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¹⁰⁶⁾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맑스-레닌주의의 創造的 적용이라는 句節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체사상의 內容과 機能도 1980년대에 들어와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80년대 初中盤에 정립된 ‘사회정치생명체론’이었다. 이것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당시 先進 社會主義圈에서 일고 있던 改革의 바람과 金正日 후계체계의 공고화였다. 그리고 金正日 자신이 ‘사회정치생명체론’ 創始의 主役으로 활약했다.

北韓의 有機體的 國家觀은 1960~1970년대의 ‘수령론’과 ‘후계자

106) 위의 책, p. 531.

론'에 이어서 1980년대에는 '사회정치생명체론'으로 가일층 발전되었다.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은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論文을 발표했다.¹⁰⁷⁾ 그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前提하고, 前者가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後者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곧, 肉體的 生命은 發生, 發展, 死滅의 全過程이 生物學的 法則의 지배를 받는 有限한 것이나, 사회정치생명은 “정치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으로서 永生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생명의 모태는 首領이며, 사회정치생명체 안에서 首領과 黨, 그리고 人民大衆의 상호관계는 渾然一體로서 “유기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은 이어서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談話(소위 「7·15論文」)를 통해 '사회정치생명체론'을 北韓의 새로운 統治模型으로 具體化시켰다.¹⁰⁸⁾ 이 談話는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적 원칙을 繼承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107)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81.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킨 불멸의 총서”로 評價되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543.

108)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144~169.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生命으로 결합된 運命共同體로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곧,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으로 구성되는 북한체제의 모든 構成員은 ‘한지붕, 한가족, 한몸’의 사회정치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金正日의 談話는 有機體的 家族國家觀을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드러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 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키워준 生命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生命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 나갑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 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 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보지 않을것입니다.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이렇듯 政治的 生命을 매개로 하여 아버지 首領과 어머니 黨, 그리고 그 자식으로서의 인민대중이 ‘혈연적인 관계’ 혹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은 封建·儒敎的 傳統과 크게 共鳴하고 있다.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사실상 血緣共同體에서

孝를 중심에 마련해 두고 개인에게 영원한 生命을 보증하는 儒敎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⁰⁹⁾ 북한의 國家는 곧 家族의 擴大 概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북한의 권력구조 자체가 親姻戚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대가족체제라는 사실도 ‘사회정치생명론’과 실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정치생명체론’에 입각한 북한의 統治理論은 朱子學 傳統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儒敎原理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⁰⁾ 왜냐하면 ‘사회정치생명체론’에서 주장하는 首領에 대한 무조건적인 孝誠과 忠誠은 수령의 無誤謬性和 全知全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君主의 완전성을 否認하고 易姓革命도 용납한 原始 儒敎나 陽明學的 전통보다 더욱 더 보수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은 오히려 基督教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있다. 곧,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비유하여 김일성은 聖父, 김정일은 聖子, 그리고 주체사상은 聖神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¹¹¹⁾ 북한의 모든 개별 家庭들은 그러한 三位一體를 眞理로 받아들이는 ‘聖家庭’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9) 슌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서울: 동화연구소, 1991), p. 244.

110)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指導思想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p. 92.

111) Gavan McCormac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198 (1993), pp. 21~48.

김정일은 ‘사회정치생명체론’이 1990년대초 북한이 對外情勢的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믿고 있다. 1991년 5월 5일에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에서 북한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北韓 社會主義體制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원천으로 하여 首領과 黨, 人民大衆이 굳게 일심단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¹¹²⁾ 결국 북한 스스로는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된 公的 家父長制의 강화가 體制維持에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이는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경제적 침체상황 하에서 북한이 가족정책 일반을 보다 家父長的인 것으로 回歸시키는 理念的 背景으로 작용하게 된다.

2. 經濟沈滯와 家族政策의 復古主義

1980년대 이후 북한의 經濟가 심각한 沈滯局面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이 公式的인 統計數値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제시되고 있는 散發的인 推定置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1960~1970년대에 비해 크게 惡化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구동독외교관으로서 평양에 장기간 滯留한 바 있는 샤이페는

112) 「로동신문」, 1991. 5. 27.

북한의 제2차 7개년경제계획 기간(1978~1984) 동안 經濟成長率은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¹¹³⁾ 또한 그 이후 1980년대 후반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더욱 떨어져 약 1.3%로 推定되고 있고,¹¹⁴⁾ 韓國銀行 발표에 의하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경제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의 下降 혹은 마이너스局面의 原因과 결과로서 北韓의 낮은 공장가동율도 거의 定說이 되어있다. 북한의 실질적 공장가동율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율에 관한 것 이상으로 推定과 推測이 亂舞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綜合적으로 볼 때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生産施設 가동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문제는 經濟的 침체와 低水準의 산업시설 가동율이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내구력을 내부적으로 蠶食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침체국면은 住民들의 社會的 不滿을 야기할 것이며, 공장가동율의 저하에 따른 失業率의 증가는 完全雇用이라는 사회주의 經濟原理에 정면으로 背馳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될 所持도 갖고 있다.

경제사정의 악화는 또한 북한의 家族政策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실업을 증가의 一次的 被害者가 女性이

113) Siegfried Scheibe, “기로에 선 북한경제·사회”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1991. 6. 28), p. 3.

114)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219.

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 傳聞에 의하면 북한에서 勞働能力이 있는 여자들 가운데 部分失業 人口가 40~60%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⁵⁾ 비록 이러한 통계수치의 정확도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실업이 계속 늘 수 밖에 없는 論理的 根據는 있다. 우선 不景氣의 경우 勞働市場에서 여성의 신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男性보다 여성이 먼저 해고되는 것은 일반화된 상식이다. 특히 북한은 男性 勞働力 雇用 爲主의 重工業을 중심으로 産業構造를 편제하고 있으며, 女性人力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부문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직면하여 북한은 1980년대부터 가족관계의 가부장제적 환원을 모색했다. 이는 한편으로 家口所得의 감소에 따른 女性의 對男性 依存度 증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경제 침체에 따른 男性家長들의 사회적 不滿을 家庭內部에서 稀釋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再家庭化는 失業率의 증가에 따른 여성 유희노동력의 증대를 그냥 放置하지 않고,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가정생활과 공존·연계시키고자 하는 발상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족정책의 변화는 김정일 후계체계의 강화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復古的인 女性觀이 보다 浮刻되는 양상을 드러냈다.¹¹⁶⁾ 金日成의 어머니 강반석, 金正日의

115) 알렉산드리아 유리에비치 만수로브, 「소련학자가 본 북한」(서울: 남북문제연구소, 연도미상), pp. 42~45.

116)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pp. 3~6.

어머니 김정숙이 “북한여성들의 모범”으로 미화되면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女性像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북한의 活字媒體 및 映像媒體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일정한 여과장치 없이 여성의 전통적 지위와 역할을 표현하고 있으며,¹¹⁷⁾ 노래 歌詞 등을 통하여 “여자는 꽃”이라는 反女性解放的 인식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1984년에 김정일이 제시한 「8·3인민소비품생산 운동」은 생활필수품의 생산증대를 편의작업반 혹은 家內作業班 활동강화를 통해 기대한 것이었는데,¹¹⁸⁾ 이것은 여성을 일차적으로 가정에 묶어둔 채 副業化한 여성노동력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戰略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 가족정책의 復古主義的 혹은 脫社會主義的 경향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文件은 1990년 10월 24일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라고 볼 수 있다.¹¹⁹⁾ 解放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婚姻 및 家族關係를 규제하는 법이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나 「가족법」이 體系的으로 정비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사회주의 理論에서 가족제도란 國家와 함께 消滅되어야 할 봉건적 遺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家族法을 새삼스럽게 公式的으로 제정한 것 자체가 가족에 대한 解釋과 意味가 과거로부터 달

117)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pp. 186~201.

118) “김정일동지께서 경공업제품 전시장을 돌아보시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p. 136~137.

119) 북한 「가족법」의 원문은 북한연구소, 「북한 가족법과 가족실태」(서울: 북한연구소, 1991), pp. 119~137 볼 것.

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다.

「가족법」은 제1조에서 그 제정 目的을 “은 사회를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사회정치생명체론’에 입각한 家族國家觀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 “사회적 기층생활단위”로서 가족의 사회적 존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가정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여 제15조에서 “가정을 공고히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 담보”로까지 규정했다.

「가족법」에서는 結婚과 離婚 등 가족의 성립과 해체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가족법」 제11조는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결혼등록을 하지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하여 國家가 인가하는 범위 밖의 男女間 性生活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性的 統制를 통한 국가의 社會的 規制 역량을 提高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결혼’이라는 강령적 宣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있어서 참된 愛情과 함께 “혁명적 동지애”를 요구함으로써 가정이 북한에서 “사회적 細胞”로 존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婚姻年齡에 관하여 제9조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未婚女性은 勞動, 既婚女性은 家庭으로 분리하는 效果를 통하여 경제침체에 따른 女性失業率의 增加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에 제정된 「가족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을 대거 回復하고 있는 점이다. 一次的으로 이는 北韓 경제사정의 惡化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6조는 어린이 養育과 教養을 어머니의 우선적 역할을 삼는 母性役割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全女性的 勞動階級化라는 사회주의 家族原理에 위배되는 “反社會主義的이고 反女性解放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²⁰⁾ 「가족법」은 또한 敬老孝親的 儒教思想을 復活시키고 있다. 제35~36조에서 親族扶養의 범위를 부모자식은 물론 兄弟姊妹, 祖父母와 孫子女 관계 및 기타 미성인과 勞動能力이 없는 者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은, 親族 내지 家族扶養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가부양의 범위를 축소하고 가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조처라고 해석된다. 後見制度의 擴大 導入 역시 국가의 福祉 부담을 감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가족법」은 아울러 相續制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이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 명백히 後退한 것이다. 제5조는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으로서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6조는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 그 밖의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相續制 인정에 대한 公式的인 설명은 “상속은 사망한 공민의 개

120) 조형, “북한 사회체제와 가부장제,” p. 20.

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과도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¹²¹⁾ 그러나 상속제 인정의 진정한 목적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國家扶養 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家族扶養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곤경에 연관하여 勞動의 物質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가족법」의 복고주의는 북한 가족정책의 脫社會主義化 혹은 오오우치 노리아키의 주장대로 가족제도에 있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현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¹²²⁾

121) 「민주조선」, 1991. 5. 23.

122) 오오우치 노리아키(大內憲昭), “法律로 본 北韓의 家族, 社會, 國家制度,” 「統一評論」(東京: 統一評論社, 1992년 1~6월호 連載), 민족통일연구원 번역자료, p. 10.

第 VI 章 結論 및 向後 展望

북한의 家族政策은 지난 半世紀에 걸쳐 국가적 목표와 주어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해 왔다. 국가는 家族의 문제를 社會의 私的 領域에 방치하지 않고 干涉과 規制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북한의 家族政策은 국가엘리트가 의도하는 방향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었다. 全體的으로 개관할 때, 북한의 가족제도 변화는 1940~1950년대 사회주의 移行期 동안에 피크를 이루었다. 가족제도의 혁명적 개조는 社會主義 발전기에 추진된 여성의 勞動階級化와 家事 및 育兒의 사회화정책을 통해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성립된 金日成 유일지도체제는 북한을 家父長的 家族國家로 변모시켰고, 個別 家庭에게는 '사회적 세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맡겨졌다.

이와 같은 가족정책의 이중적 성격은 1980년대 이후 경제적 狀況의 악화, 김정일 후계체계의 공고화, 그리고 對外情勢的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점차 퇴조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곧, 有機體的 家族國家論이 '사회정치생명체론'에 의해 더욱 교조화되었고,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社會統制와 社會扶養의 의무가 국가로부터 가족내부로 점차 이전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대한 것이다. 1990년에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北韓의 家族政策史에 한 획을 긋는다. 결국 가족정책에 관한 한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정권수립 이전으로 'U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치사회화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정책의 가부장적 환원과정은 보면, 북한체제가 가족을 사회통제의 주요 수단으로서 재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移行期 및 發展期 동안에는 소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창출을 위해 育兒와 教育을 封建的 가정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였지만, 사회주의의 歷史가 50년이 가까워지는 동안 진행된 세대교체는 가족을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可能性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각종 體制不安 요인에 대처하여 북한은 대내적 사회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 메카니즘을 家族에서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理論的인 측면에서 북한의 가족정책은 階級葛藤論에 입각하여 상부구조로서의 가족을 소멸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評價하던 Engels·레닌적 관점으로부터, 家族을 社會統制 및 社會統合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儒教風의 有機體的 家族主義 혹은 파슨즈式의 構造機能主義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와 가족의 共滅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古典的 이론이 북한에서 國家와 家族의 共生論으로 역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이것은 가족의 問題를 놓고 사회주의적 처방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던 맑스의 苦悶이 북한에서 표출된 현상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慣性의 法則'을 확인하는 法社會學的 결론이다. 사회조직 가운데 가장 持續的이고 또한 가장 私的인 것으로 남아있는 가족제도는 다른 분야의 社會變

動과는 달리 國家의 強制力에 저항하는 힘이 유달리 강력하다. 더군다나 북한과 같은 폐쇄형 사회에서는 전통적 사회·문화가 온존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북한이 가족관계의 사회주의적 혁명이라는 레토릭의 裏面에서 儒教的 가부장제를 발전·강화시킨 것도 당면적으로 주어진 政治的 需要와 經濟的 條件에 부응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관성적 측면에 일찍부터 着眼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영합하거나 逆利用한 결과일 수도 있다.

향후 북한의 가족정책은 1980年代 以後의 추세를 답습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제는 經濟的 沈滯局面이 지속되고 김정일 후계체계가 巡航하며 對外的인 開放이 제한적인 것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家父長的 家族國家 원리는 북한 지도부의 統治費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강제력이나 물질적인 풍요, 또는 民主主義的 政治過程 대신, 規範的이고 유기체적인 정치질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체제유지를 위한 費用負擔은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앞으로 ‘사회정치생명체론’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家族國家的 屬性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경제사정의 악화가 계속되어 男性家長들의 불만이 점차 증대하고 여성들의 失業率이 증가할 경우, 여성의 再家庭化가 더욱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여성의 地位 弱화를 통해 사회적 불안요소의 확산을 예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社會福祉의 책임을 國家로부터 가정으로 점차 轉嫁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難에서 파생하는 政治·社

會的 불만의 타겟을 가족수준에서 한번 濾過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장차 改革과 開放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가족제도의 탈사회주의적 경향은 쉽게 翻覆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개인 혹은 家族單位의 물질적 인센티브를 強化하려는 정책은 생산단위의 탈사회화 혹은 탈집단화로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 생산단위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中國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분야에서 家族農의 부활은 북한으로서도 유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예상되는 社會的 副作用도 가정의 機能을 강화시킬 것이다. 靑少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逸脫行爲가 늘어나고 社會全般的으로 사회주의적 規範이 해이해질 경우 社會化 및 社會統制의 책임이 家族 內部的 수준에서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가지 可變的인 변수는 경제적 改革과 開放이 (실제로 추진되고 성공하는 경우) 북한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만일 북한이 경공업발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여성의 노동력은 다시 중요해질 것이고, 따라서 가족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다시 요구될지도 모른다. 반대로 군수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여 중공업발전에 치중하는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고용효과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 가운데 어떤 전망이 현실화될 것인가는 북한 지도부가 취할 향후의 전략적 선택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이것은 개혁과 개방이 어떤 성격의 정치체제하에서 추진될 것인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할

70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김선옥 외. 「北韓女性の地位에 관한 연구—女性關聯法 및 政策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각년도.

김정일. 「김정일선집 I」.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민족통일연구원.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北韓研究所. 「北韓 家族法과 家族實態」. 서울: 북한연구소, 1991.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알렉산드리아 유리에비치 만수로브. 「소련학자가 본 북한」.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연도미상.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 1991.

이은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_____. 「북한사회의 체계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조선로동당출판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
도.

V. I. 레닌, 편집부 편역. 「레닌의 青年·女性論」. 서울: 함성, 1989.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_____.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Engels, Frederick. *The Origin of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the Researches of Lewis H. Morgan*. in
Volume 2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884/1969.

Halliday, Jon. and Cumings, Bruce. *Korea: the Unknown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Marx, Karl and Engels, Frederick.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70.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Rai, Shirin. Pilkington, Hilary and Phizacklea, Annie, eds. *Women in
the Face of Change: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Chin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Stepan, Alfred.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Walby, Sylvia. *Theorizing Patriarchy*.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Weber, Max.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 & ed. with intro. by H. H. Gerth and C. W. Mill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48.

2. 論 文

강정구. “韓國戰爭과 北韓社會主義 建設.”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_____. “韓國戰爭과 北韓社會의 社會構造 變化.”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고병철. “한국전쟁과 북한정치체제의 변화.” 고병철 외. 「韓國戰爭과 北韓社會主義體制建設」.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김귀옥.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당과 인민대중의 결합’

- 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 리재숙.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장 우월한 어린이보육교양제
도를 마련해주시여.” 「조선여성」, (1991. 5).
- _____.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
하여 주시려고.” 「조선여성」, (1991. 6).
- 박현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의 女性政策.” 김남식 외. 「해
방전후사의 인식 5: 북한편」. 서울: 한길사, 1989.
- 본사기자. “여성해방위업을 위하여: 여성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조선여성」, (1992. 2).
- 서선희. “가족은 유용한 분석단위인가?” 「가족학논집」, 3 (1991).
- 스즈끼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 오오우치 노리아키(大内憲昭). “법률로 본 북한의 가족, 사회, 국
가제도.” 「통일평론」. 동경: 통일평론사, 1992. 1~6.
- 이온죽. “중국의 현대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중국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9.
-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주체사
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박사학위논문, 1993.
- 장필화. “북한사회의 성별분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 全廣熙. “한국전쟁과 남북한 人口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 전상인. “틸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 서울: 열음사, 1992.
- _____. “잃어버린 革命, 흔들리는 理念: 한반도 사회주의운동 100년의 회고와 평가.” 한국지역연구협의회 '93년도 통일교육연구 발표논문, 1993. 4. 11.
- 조형. “북한사회체제와 가부장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주최 통일문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11. 30.
- 최흥기. “유교와 가족.” 「가족학논집」, 3 (1991).
- Siegfried Scheibe. “岐路에 선 북한경제·사회.”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발표논문, 1991. 6. 28.
- Cumings, Bruce.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4 (1982/1983).
- Hartmann, Heidi.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in Giddens, Anthony and Held, David. eds. *Class, power, and Conflict: Classical and Contemporary Deb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Lee, Hyo-Jae. “National Division and Family Problems.” *Korea Journal*, vol. 25, no. 8.
- McCormack, Gavan.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198 (1993).
- Rueschemeyer, Dietrich. and Evans, Peter.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oward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Underlying Effective Intervention.” in Evans, P. Rueschemeyer, D. and Skocpol, Theda.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Tilly, Charles.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in Tilly, C.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3. 其他

「로동신문」.

「민주조선」.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3 統一費用 研究(I)
- 93-14 베트남 綜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研究報告書 93-1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